

제 14 장 전자상거래

제 14.1 조 정 의

이 장의 목적상,

디지털제품이라 함은 전달 매체에 고정되거나 전자적으로 전송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적으로 부호화된 컴퓨터 프로그램·문자열·동영상·이미지·녹음 또는 그 밖의 제품을 말한다.¹⁴⁻¹⁾

전달매체라 함은 현재 알려져 있거나 향후 개발될 방식으로 디지털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물리적 객체로서 디지털제품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인식·재생산 또는 통신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, 광매체·플로피디스크 또는 자기테이프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.

전자적 전송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된이라 함은 전자기적 또는 광학적 수단을 이용하는 디지털제품의 전달을 말한다.

전자적 수단의 이용이라 함은 컴퓨터 및 디지털 공정의 사용을 말한다.

제 14.2 조 범 위

1.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가 제공하는 경제적 성장과 기회, 이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회피하는 것의 중요성, 그리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규범의 적용가능성을 인정한다.

14-1)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디지털제품은 디지털화된 형태의 금융상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

2. 이 장은 청각적, 시각적 또는 그 모두의 수신을 위하여 콘텐츠 제공자에 의하여 편성되고 콘텐츠 소비자가 그 편성에 대하여 선택권을 갖고 있지 아니한 일련의 문자열·동영상·이미지·녹음 또는 그 밖의 제품의 전자적 전송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.

제 14.3 조 서비스의 전자적 공급

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양 당사국은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는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조치가 제9장(국경 간 서비스 무역)·제10장(투자) 및 제12장(금융서비스)의 관련 규정에 포함된 의무의 범위에 해당되고, 그러한 의무에 적용될 수 있는 예외를 따르고, 의무가 제9.6조 및 제10.9조에 따른 그러한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을 확인한다.

제 14.4 조 디지털제품

1. 각 당사국은 전자적 전송에 의한 타방 당사국의 디지털제품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관세, 그 밖의 관세, 수입·수출에 드는 비용 또는 부과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¹⁴⁻²⁾

2. 각 당사국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디지털제품을 담은 수입 전달매체의 관세 가격을 결정한다.

3. 당사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디지털제품에 대하여 그 밖의 동종 디지털제품에 부여한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지 아니한다.

가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근거하는 것

(1) 불리한 대우를 받는 디지털제품이, 타방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창작·생산·출판·저장·전송·계약·위탁되거나 또는 상업적 조건으로 처음으로 이용 가능하게 되었던 경우

(2) 그러한 디지털제품의 저작자·실연자·생산자·개발자 또는 배

급자가 타방 당사국의 인인 경우.

나. 그 영역 내에서 창작·생산·출판·저장·전송·계약·위탁되었거나 또는 상업적인 조건으로 처음으로 이용 가능하게 된 다른 동종 디지털제품을 달리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것

4. 제3항은 제9.6조와 제10.9조에 규정된 불합치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.

14-2) 이 조의 제1항은 일방 당사국이, 이 협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부과하는 한, 또는 그 밖의 국내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.

[날짜]

대한민국 외교통상부
자유무역협정국장
김한수

김한수 국장 귀하,

본인은 2005년 월 일 [장소]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(“협정”)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.

위 협정에 기인하여, 본인은 협정 제14장(전자상거래)과 관련하여 제14.1조제1항의 문제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각료결정에 변경이 있을 경우 회원국은 동 조항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양 당사국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.

귀하께서 귀 정부도 위에서 진술된 우리 정부의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이러한 양해가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취급된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/서명/

[싱가포르 대표의 성명]

[직위]

[날짜]

_____ [싱가포르 대표의 성명]

[직위]

_____ 귀하,

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5년 월 일자 귀하의 서한의 접수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.

“ (싱가포르측 서한 본문) ”

본인은 우리 정부도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이 양해가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.

/서명/

김한수

대한민국 외교통상부

자유무역협정국장